

## 부산지방해양수산청 공고 제2020 - 263호

「부산항 항법 등에 관한 규칙」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알려드리고자 「행정절차법」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0년 10월 19일  
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

### 부산항 항법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

#### 1. 개정이유

선박 대형화 추세와 항만 이용 여건 변화 등을 감안하여 선박 항행 최고속력 제한, 항법과 항로 변경 등 현행 규정을 보완하여 해양사고를 예방하고, 항만 운영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

#### 2. 주요내용

- 가. 일부가 항계 바깥 구역인 신항 가덕수도와 최고속력 지정 근거 법령은 「해사안전법」 제31조이나, 현행 규정에서 이를 명시하지 않아 이를 명확히 기입(안 제1조, 제17조)
- 나. 충돌 위험성이 높은 해역의 항법·항로 변경(안 제8조, 제12조)
- 다. 선박 대형화 추세 등을 감안한 신항 내 최고속력 제한과 부산항 전체 최고속력 표기 방식 명확화(대지속력으로 통일), 남외항 정박지 시설 능력 조정(안 제3조, 제17조)
- 라. 기타 자구 수정(항행, 통항 등 → 운항으로 통일: 제12조 제외)

### 3. 의견 제출

이 개정(안)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1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지방해양수산청(참조 : 해양수산환경과장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,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우리 부 홈페이지(<http://www.portbusan.go.kr>) 「알림마당-우리청소식-고시」 게시판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#### 가.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

개 정(안)	수 정(안)	수 정 사 유

나. 성명(기관·단체의 경우 기관·단체명과 대표자명), 주소 및 전화번호  
다. 그 밖의 참고 사항 등

#### ※ 제출의견 보내실 곳

- 일반우편 : 부산 동구 충장대로 351 부산지방해양수산청 해양수산환경과
- 전자우편 : kwonbokyeun@korea.kr
- 전화/팩스 : 051-609-6554/6520